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그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시설주관기관인 시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그 대행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